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의 안 번 호 | 928 |
|---|---|

2023년 12월 19일
교 육 위 원 회

## Ⅰ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0일, 김 경 의원외 25명

2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3. 상정일자 :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

(2023년 12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 경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○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실태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○ 예산 등 지원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근거(안 제15조제3항 신설).

## Ⅲ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김 경 의원외 25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928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○ 금년 6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,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국고보조금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이 부정하게 사용되었고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80억 원 정도가 편법 사용 및 낭비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.[1)]

이에 정부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회계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등재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[2)]

○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은 총 242억 5천 6백만원으로, 적지 않은 예산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집행되고 있는 바, 동 금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.

---

1) 보도자료: 국무조정실 "교육교부금 282억 부정사용...뮤지컬 관람 등"(YTN, 2023.6.6.)
2) 보도자료: 정부, '방만 운영'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예고(뉴스핌, 2023.6.7.)

**[표-1]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사업 예산 집행 현황**

(단위: 천원, 결산기준)

| 2020년 | | 2021년 | | 2022년 |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교특회계 | 특교/전입금 | 교특회계 | 특교/전입금 | 교특회계 | 특교/전입금 | |
| 7,183,233 | 2,777,359 | 4,914,697 | 1,931,345 | 5,545,713 | 1,903,199 | **24,255,546** |

**[표-2]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**

(단위: 건)

| 구분 | 초 | 중 | 고 | 특수 | 각종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0학년도 | 160 | 401 | 257 | 3 | 1 | **822** |
| 2021학년도 | 511 | 947 | 486 | 8 | 2 | **1,954** |
| 2022학년도 | 840 | 1,430 | 539 | 3 | 6 | **2,818** |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집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예산 중 특정한 사업주체가 예산지원을 받을 경우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,

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 집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.

○ 다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집행하는 학교폭력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외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과거 서울시교육청에서 수행한 일부 연수, 행사 등에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○ 현행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[3]」에 따르면 보조금

3)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,

용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[4)]

○ 동 조례는 재원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예산 분야에도 적용하도록 미리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,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8833, 2023. 6. 8.).

**[표-3] 최근 3년간(2021년~현재) 학교폭력 관련 사업 용역 현황**

| 계약연도 | 용역명 | 금액(천원) |
|---|---|---|
| 2021 |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 담당자 연수 용역 | 2,640 |
| |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소통·배려·성장 캠페인 공모전 용역 | 15,000 |
| 2022 | 소통·배려·성장 캠페인 공모전 우수작품 순회 전시 용역 | 19,800 |
| | 2022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 담당자 연수 용역 | 28,550 |
| | 2022 관계회복 활동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용역 | 5,000 |

---

제17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**실적보고서(이하 "실적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지**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보조사업자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1.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
2.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
3.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

4) **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**
제18조(대가의 지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라 선금급(先金給)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Ⅴ. 토론요지 : 없음

Ⅵ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Ⅶ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## 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5조(예산 등 지원) ①·② (생 략)<br><br><신 설> | 제15조(예산 등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|